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조례로 위임된 수익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시 수익계약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20조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 반영 (안 제35조, 제38조, 제38조의2, 제63조, 제63조의2)
 - 행정자치부장관 → 행정안전부장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산림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